

2021년도 보건장학회 학술연구비(장학금) 수혜자 공모요령

1. 신청자격

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소재한 보건분야의 대학원, 연구소 등에서 보건관련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자

다만, 본 연구비는 장학금이므로 과거 수혜 경력이 있거나, 교수(부교수 포함) 및 박사 이상 학위자는 제외

2. 추천방법

학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은 다음의 사항에 의거하여 추천하여야 함

- 1)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국비 또는 타 장학금(연구비)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
- 2) 연구는 2023년 7월 31일 까지(단, 본 재단의 승인을 얻을 경우 2024년 7월 31일 까지) 완료하여 본 재단에 제출할 수 있는 자
- 3) 공동연구의 경우 최소한 차석연구자일 것

3. 모집부문 및 인원

- 1) 부문 : 의학, 약학, 치의학, 한의학, 간호학, 식품영양학, 보건연구
- 2) 인원 : 총 00명

4. 연구비(장학금) 지급액

1인당 1,000만원

5. 제출서류

- 1) 추천서
 - (1) 부문란에 상기 3의 1) 모집부문을 기재
 - (2) 연구하고자 하는 학교 또는 기관에서 추천을 하되, 학교의 경우 학교장(산학협력단장 제외), 기타의 경우 소속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
 - 2) 이력서(사진첨부)
 - 3) 연구계획서 (항목은 변경할 수 없으며, 5매 이내로 작성)
 - 4) 주민등록등(초)본
- ※ 상기 1), 2), 3)의 소정양식은 유한재단 홈페이지(공지사항)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

6. 접수

1) 기간 : 2021년 5월 18일 ~ 2021년 6월 8일

※ 우편접수는 도착 기준 임

2) 장소 : 재단법인 보건장학회 사무국

주 소 :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(유한양행 빌딩 4층)

우편번호 : 06927

3) 방법 : 우편 또는 방문

※ 팩스 및 이메일은 불가

7. 기타사항

1) 수혜자 선정결과 발표

유한재단 홈페이지(공지사항)게시 및 개별 통보 (2021년 7월 1일 예정)

2) 연구비(장학금) 지급

(1) 수혜자로 선발된 시점에서 연구비(장학금)를 지급 함

※ 연구논문의 완성은 반드시 학술전문지에 게재하는 것을 전제로 함

※ 연구논문 완성시에는 논문 전문(CD 포함)과 게재된 학술전문지를 제출해야 함

(2) 연구기간내에 계획한 연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기 수령한 연구비(장학금)를 지체없이 본 재단에 반납하여야 함

3) 연구논문 과제는 중도에 변경할 수 없음

4) 연구논문 말미에 「 본 연구는 보건장학회의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」 을 표시해야 함

※ 「보건장학회」의 영문 표기 : Health Fellowship Foundation

5) 추천 인원수는 제한이 없음

6) 제출서류는 본 재단의 소정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 함

7)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함

8) 완성하여 제출된 논문은 본 재단에서 「연구논문집」으로 발간하여 배포 함

9) 전화 문의 : (02) 828 - 0298

보건장학회 학술연구비 수혜자 추천서

부 문	부 문
--------	--------

1. 성 명 : 성 별 : 남자 · 여자
2. 생년월일 : 19 년 월 일 (만 세)
3. 연 락 처
- 주 소 : 우편번호 :
- 전화번호 : () - 이동전화 :
- E - mail :
4. 소속 학교(기관) : 학위 : 직위 :
5. 학교(기관) 주소 : 우편번호 :
- 전화번호 : () -
6. 추천자 의견 및 총평

위 사람에 대하여 학술연구기간중 일신상에 관한 사항과 연구 기간내에 연구과제를 완성하게 할 것을 보증하며, 이에 귀 재단의 학술연구비 수혜자로 추천합니다.

2021년 이론 이론

지 원 자 : (인)

추천자 직위 :

성명 : (직인)

재 단 법 인 보 건 장 학 회 귀 중

이 력 서					
사 진			출 신 도 명	성 명	
			생 년 월 일	년 월 일 (만 세)	
현 주 소					
년	월	일	학 력 및 경 력 사 항		발 령 청
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 함					
위 본인 (인)					

연구 계획서

1. 연구과제 :
2. 연구목적 :
3. 연구기대효과 :
4. 연구내용의 개요 :
5. 연구방법 :
6. 연구추진계획(스케줄) :
7. 소요예산(구체적인 산출근거 내역) :
8. 예상되는 효과 및 활용방안 :

본인은 계획한 연구과제를 2023년 7월 31일 까지 (단, 귀 재단의 승인시 2024년 7월 31일 까지) 완성하여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후 제출하겠으며,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귀 재단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순응하겠습니다.

2021년 월 일

소속 학교(기관) :

본 인 성 명 :

(인)

재 단 법 인 보 건 장 학 회 귀 중